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 ESG레벨업 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①(생략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 ③(생략)	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①(현행과 같음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등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(생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생략)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	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	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

변경	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(생략) 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 4. ~ 10. (생략) ② (생략)	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 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 4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	--	--
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략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 (생략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	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
--	--	--

	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	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
--	--	--

	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한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. (생략) 3. ~ 10. (생략)	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한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. (현행과 같음) 3. ~ 10.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(생략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5호 내지 제9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생략) ③(생략)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(현행과 같음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 제5호 내지 제9호, 제17조 제2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<u>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(생략)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(생략)	제21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③ ~ ⑤(현행과 같음)
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3조(판매가격) ①(생략)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 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 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 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 다.	제23조(판매가격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 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 한 영업일부터 <u>3영업일</u> 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 다.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 한 날부터 <u>제2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 30분 경과 후 에 환매청구시 <u>제3영업일</u>)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 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 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 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 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 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4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4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 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(생략)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 한 날부터 <u>2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3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 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 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 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 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4 영업일</u> (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5 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 영업일</u>)에 자투자신탁에게 환매대 금을 지급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(생략)	제29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 ② ~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②(생략)	제31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(이하 “결산서류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 손익계산서 3. 자산운용보고서 ②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생략)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제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생략) ⑥ (생략)	제41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<u>5영업일</u>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2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 (생략)	제42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	제45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투자신탁으로서 설정 이후 1년 <u>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

	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. (생략) ② ~ ⑨ (생략)	실 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. (현행과 같음)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u>